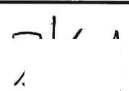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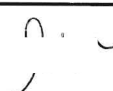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3차)

1.일 시	2022년 4월 20일(수) 13시 00분	2.장 소	8413호 회의실
3.참석자	백 , 김 , 김 , 김 , 염 이	4.불참자	김 , 김 , 이
5.안 건	1)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2) 2022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3)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6.회의 내용 위원장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제41조 의거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2022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함. (제 1의 안)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위원장 :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 주무부서 : 2021학년도 세입을 설명함. 등록금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등 세입총액 56,162,250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 대학운영경비 총당에 따른 기금인출수입 증가임의 설명함. 2021학년도 세출을 설명함.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 미사용 차기이월자금등 세출총액 56,162,250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교직원 2.5년치 급여보전 및 호봉테이블 변경 분에 따른 보수 증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관리운영비와 연구학생경비 감소, 기부금 및 예금이자 감소에 따른 임의기금적립 감소 분 임의 설명함.			
간서명 - 위원 : 김  위원 : 김  위원 : 염 			

위 원 : 보수 지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주무부서 : 임의협약에 따른 급여보전 지출, 호봉테이블 변경에 따른 상승, 승진 및 호봉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일시적인 증가이며, 차기년도에는 급여보전에 대한 지출은 없음을 설명함.

위원장 :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에게 이의가 없는지 질의함.

위 원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고 위원 모두 동의함.

(제 2의 안) 2022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위원장 : 2022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

주무부서 : 2022학년도 1차 추경예산 세입을 설명함. 홍보센터(유학생 관련 UCLG 사업)과 HRD사업단(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규 사업 참여에 따른 252,500천원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기이월자금 1,535,359천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과 임의특정목적기금인출수입을 감액하여 편성함을 설명함.

2022학년도 1차 추경예산 세출을 설명함. 신규 사업비 세입에 따른 사업별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이월자금 중 명시이월 금액에 대한 지출예산과 계속성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세입·세출 모두 본예산 대비 1,022,662천원 증가된 69,603,546천원으로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설명함.

위 원 : 임의특정목적기금인출 예산의 감소 분이 크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원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함.

주무부서 : 비등록금회계 내 운영 중인 HRD사업단, 사이버평생교육원, 생활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수익이 전년도 결산을 통해 확정되고, 이 중 일부를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인식하여 대학운영경비 총당 분인 기금인출수입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함.

간서명 - 위원 : 김

위원 : 김

위원 : 염

(제 3의 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

주무부서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제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9조) 내용을 조정하고, 회의소집(제8조) 요건을 구체화함에 따라 본 운영규정 개정(안) 안건을 상정함.

제2조(구성)에 대해 교직원위원 요건을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함.

제8조(회의소집)에 대해 대학의 장의 요청 및 위원장 필요 시 소집하는 현행 규정에서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이 가능하며,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통지와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자료 송부하고,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개정됨을 설명함.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조항의 삭제함을 설명함.

위 원 : 현행 회의소집 및 통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함.

주무부서 : 현재 회의소집 역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통지와 회의자료 송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에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을 설명함.

위 원 :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조항은 삭제임을 질의함.

주무부서 :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의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부분을 반영하였음을 설명함.

간서명 - 위원 : 김

위원 : 김

위원 : 염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함.

위 원 : 추가 의견 없음을 답함.

위원장 : 2022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한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2022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모든 안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학교 측 김 위원, 학생 측 김 위원, 외부인사 영 위원 3인을 간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함.

위 원 : 위원 모두 동의함.

위원장 :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함.

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 날인함

2022년 4월 20일

위원장 : 백

부위원장: 김

위 원 : 김

위 원 : 영

위 원 : 이

위 원 : 이

위 원 : 김

위 원 : 김

위 원 : 김